

##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02년 11월 20일

나. 회부일자 : 2002년 11월 20일

3. 제안 이유

- 충청북도 1지역1명품육성기금과 농어촌개발기금으로 분리운영중인 2개 기금사업을 농어촌개발기금으로 통합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 농업투자 비용의 현실성을 감안하여 용자한도액 일부를 상향조정하고 용자금의 금리를 인하하여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4. 주요 골자

- 1지역1명품육성사업을 농어촌개발기금 지원대상사업에 포함(제5조)
  - 「1지역1명품육성기금설치운영조례」의 폐지 및 기금 통합
- 사업비지원 한도액 중 일반운용자금 상향조정(제7조제2항제2호)
  - “3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내”를 “2,000만원 이내”로 함
- 용자금의 금리를 “연 3%”에서 “연 2%”로 인하 함 (제8조제2항)

## 5. 검토 의견

-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1지역1명품육성기금과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을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으로 통합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써

농업투자비용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융자한도액과 융자금의 금리를 조정하여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는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5조 제4호에 1지역 1명품 육성 사업을 신설하고 제7조 제2항 제2호 중 3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내를 2,000만원 이내로 개정하는 것이며, 제8조 제2항 중 “연3%”를 “연2%”로 하향 조정하는 개정조례입니다.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산만하게 운영하는 기금을 통합하는 조례로 기금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농가의 금융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